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 수 확대 등〉
■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39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의 수 확대	3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임명 절차 변경	6
3. 상임위원의 사무처장 겸임 규정 삭제	9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최민희의원 등 17인

나. 제출일자 : 2024. 9. 6.

다. 회부연월일 : 2024.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안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함. 이중 2명의 위원이 상임위원이며 나머지 7명의 위원이 비상임위원에 해당함. 또한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현행법과 같은 위원 임명 구조는 결국 여야 불균형적인 구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도임. 이렇게 편파적인 구도 속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전체 위원수에 비해 상임위원의 수가 적어 책임소재도 불명확해진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원안위원의 임명 및 위촉을 국회의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의 수를 총 5명으로 늘림으로써 위원의 임명 구조를 중립적으로 개편하고, 책임소재 역시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 등).

또한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처장을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음. 사무처라 함은 위원회의 행정적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인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핵심적 업무인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그에 대한 연구와는 동떨어져 있는 업무임.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게 되는 현행법상 상임위원이 안전관리 및 감시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 중심의 업무 처리를 하게 되면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

이에 사무처장을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본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여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케 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Ⅲ. 검토의견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 수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위원장 포함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4명-----.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4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함)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안위의 7명의 비상임위원은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매월 1~2회 정도 원안위 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원안위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신규 인허가, 계속운전 허가, 원전에 대한 설계변경 등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안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체 위원수에 비해 상임위원의 수가 적어 주요 안전에 대해 비상임위원 중심의 회의로 결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문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원안위의 상임위원 수를 위원장 포함 5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독립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임위원 중심의 위원회를 상임위원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과 같이 상임위원체제로 개편하게 되면, 원안위의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주요 안전의 상시 검토를 통해 심의에만 전념함으로써 원안위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원안위의 주요 기능에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위원이 되는 상임위원을 확대하는 것은 기관 운영의 비효율이 우려되고, 정부조직 확대 및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원안위의 상임위원을 3명 증원하고, 상임위원의 사무처장 겸임을 금지하는 경우(개정안 제17조 제2항),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9억 9,300만원(연평균 5억 9,8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17조제2항)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인건비	550	560	570	580	591	2,851	570
임차료 및 관리비	8	8	8	8	8	40	8
시설공사비	22	—	—	—	—	22	4
자산취득비	80	—	—	—	—	80	16
합 계	660	568	578	588	599	2,993	598

주: 1. 향후 실제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변동 및 사무공간 마련 상황 등에 따라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임명 절차 변경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총 9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을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 (생략)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u>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② ----- ----- -----포함한 8명의 위원은 <u>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u>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5조제2항은 원안위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이에 따라 현재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은 정부가 추천(위원장이 제청)하고, 나머지 4명의 위원은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2명을 추천(국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 위원 임명 체제는 여야 불균형적인 구도를 만들어 원안위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렵고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을 제외한 8명 위원의 임명 및 위촉을 국회의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¹⁾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원안위가 중립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국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 간 균형 있는 인사 추천 관행에 비취볼 때, 개정안과 같이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적절한지,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4명 총 8명의 위원을 교섭단체별 의석수에 비례하여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 「국회법」 제33조제1항에 근거, 제22대 국회의 교섭단체별 의석수에 따르면 여당 3명과 야당 5명 위원의 추천으로 구성됨.

< 국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위원 구성 현황 >

(단위 : 명)

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현행	개정안					
위원 수		9	9	5	11	9	9	9
임명· 위촉 주체	정부	5	1	2	4	4	9	4
	국회	여	3	1	-	-	-	2
		야	5	2	-	-	-	3
		구분없음	4*	-	4*	-	-	-
	대법원	-	-	-	3	-	-	-
	기타	-	-	-	-	4 (당연직) 1 (상공회의소 추천)	-	-

* 법령상 구분은 없고, 국회에서 실제 추천시 여·야 각 2명씩 추천

3. 상임위원의 사무처장 겸임 규정 삭제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사무처) ① (생략)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u>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u> <후단 신설> ③ (생략)	제17조(사무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u> --- ---. <u>이 경우 사무처장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u>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원안위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하고(제17조제1항), 정부위원이 되며(제4조제3항),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조제2항).

원안위 출범 당시²⁾에는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부위원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12호, 2011. 7.25. 제정)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장을 두면서 별도의 사무처장을 두었으나, 현재는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무처장의 역할³⁾과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 상임위원의 역할⁴⁾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행정적 사무처리 업무와 원자력안전관리 및 감시 업무 간 성격차이로 주요 의사결정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원안위의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의 지위를 분리하고,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별도로 임명하도록 변경하며, 정부위원에서 제외되도록 하려는 것임.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상임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 2대부터 상임위원이 사무처장 겸임

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사무처)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4) 일반적으로 매달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개최됨.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현황(2021~2024. 7.)>

연 도	2021	2022	2023	2024. 7. 현재
개최횟수	20	19	19	8

개정안과 같이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을 분리할 경우 각각 본래 임무에 충실하게 됨으로써, 원안위 사무처 업무관리가 효율화되고, 원안위 안전에 보다 전문적·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무처장의 임명절차와 정부위원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여짐.

다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위원회 수행 기능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확대 및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을 상임위원과 별도로 임명하고 있음.

<국내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구성 비교>

구분		원자력 안전위원회	방송통신 위원회	국가인권 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대통령	독립기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상 임 위 원	위원장	1 (차관)	1 (장관)	1 (장관)	1 (장관)	1 (장관)	1 (장관)
	부위원장	-	1 (차관)	-	1 (차관)	1 (차관)	1 (차관)
	위원	1 (고위공무원)	3 (차관)	3 (차관)	2 (고위공무원)	3 (고위공무원)	-
비상임위원		7	-	7	5	4	7
전체위원		9	5	11	9	9	9

사무처장	겸임	별도	별도	별도	별도	별도
------	----	----	----	----	----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문 의 처
02)6788-5231